

행정자치부

시정요구

제 목 소규모수도시설 소독 등 위생조치 부적정

기 관 명 부산광역시

내 용

「수도법」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“○○상수도”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 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¹⁰⁶⁾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가 지정하는 수도이며, “소규모급수시설”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·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가 지정하는 시설이다.

「수도법」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등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.

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¹⁰⁷⁾는 수돗물이 수질

106) “일반수도”란 광역상수도·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.

107) 「수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.

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」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「수도법」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,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.1mg/L(결합잔류염소 0.4mg/L)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○○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○○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「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¹⁰⁸⁾ 관리 및 운영조례」 제8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검사 결과와 점검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또는 개·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08) 소규모수도시설 = 마을상수도 + 소규모급수시설

「수도법」 제63조제2항 따라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소독 등 위생조치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「수도법」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○○○○○본부 ○○사업소는 2014년에는 ○○마을상수도(250m³/일) 등 29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을 운영하였으며, 2017년 3월 현재에는 25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.

정부합동감사 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「수도법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수질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, 2014년 2개소, 2015년 36개소, 2016년 19개소 등 총 57개소에서 잔류염소가 불검출 되었다.

소규모수도시설의 잔류염소 측정결과가 수질기준(유리잔류염소 0.1mg/L 이상, 4mg/L 미만)에 미달할 경우에는 주민공지 및 소독시설 개선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,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.

【표】 소규모수도시설 수도꼭지 잔류염소 수질기준 위반시설 현황

구 분		대상 시설수	잔류염소 수질기준 불충족 시설수	감사 시 지적사항
2014년	1분기	29	0	「수도법」 제33조 위반 (57회)
	2분기	28	2	
	3분기	27	0	
	4분기	26	0	
2015년	1분기	26	2	
	2분기	26	6	
	3분기	26	24	
	4분기	26	4	

2016년	1분기	26	4	
	2분기	26	7	
	3분기	26	3	
	4분기	26	5	
합 계		318	57	

※ ○○○○○본부 ○○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

[시정] 수돗물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위생상의 조치를 이행하시고,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